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010년 2월 25일자로 구미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재의요구 관련조항

: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컨벤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호화, 사치,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4. 그 밖에 회의실 및 전시실 등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

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 검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도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구미시에서는 이러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미 디지털전자산업관”의 명칭 및 용도를 “구미컨벤션센터”로 임의 변경하여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하였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의 사용의 금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에는 보조금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는 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전자산업관”은 “ 디지털전자산업의 전시·회의 등”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나 “컨벤션센터”는 “일반적인 전시, 회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보조사업목적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이 유

- 본 조례안의 제명에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을 구미컨벤션센터로 임의 변경한 것은 단순한 사업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업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앙관서의 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의 변경한 행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조 사업의 내용변경 등)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제1항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 또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사업목적은 “IT산업의 집적지인 구미의 전자정보산업 발전과정 홍보와 미래의 비전 제시, 지역혁신 및 과학 기술문화 확산 등 디지털전자산업의 전시·회의"로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디지털전자산업관을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전시·회의" 등이 목적인 컨벤션센터로 사업 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의 사용의 금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의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것임.

- 결국,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명칭을 구미컨벤션센터로 변경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에서 디지털전자산업관의 당초 보조사업 목적인 구미의 전자정보산업 발전과정 홍보와 미래의 비전제시 등 디지털 전자산업의 전시·홍보에 관한 목적이나 용도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전시·홍보 목적인 컨벤션센터로 변경한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본래 사업목적에 벗어난 조례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 합니다.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자정보산업의 발전과정을 홍보하고 각종 국제회의 및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IT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구미 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 전시실 및 회의실 사용료에 관한사항(안 제3조 및 별표)
- 센터 시설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설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컨벤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미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3B 1-7L에 둔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화재, 사치,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4. 그 밖에 회의실 및 전시실 등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

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센터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시실 및 회의실 등 사용료(제3조제2항 관련)

1. 전시실 등 사용료

구분				임대요율(부가세 별도)	비고
장소별	1층	홍보관	102(369㎡)	900원/㎡	08:00~20:00
			103(375㎡)		
			104(346㎡)		
	다목적실(444㎡)				
	2층	전시실(3,402㎡) (2개홀 분할가능)			
할인 할증	할인		1,2,7,8,12월 전체사용	50% 10%	
	할증		1개실 미만사용	10%	
시간외 사용료	전시실 기본 사용시간(08:00~20:00)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를 가산함.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2. 회의실 사용료

층수	시설명	실수	면적 (m ²)	임대료(단위:원, 부가세 별도)						
				오전 (09~12)	오후 (13~17)	야간 (18~21)	전일 (09~17)	반일 (13~21)	종일 (09~21)	시간당 초과요금
3층	대회의실	1실	452	531,550	815,400	475,950	1,265,600	1,265,600	1,887,550	177,000
	중회의실	1실 (2실 분할)	223	262,240	402,290	234,810	624,400	624,400	931,240	87,000
	소회의실	1실 (4실 분할)	278	326,920	501,510	292,730	778,400	778,400	1,160,920	108,000

※ 비고 : 시간당 초과요금은 30분이상 1시간 이하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한다.

관련법령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 외 사용의 금지 <개정 2009.1.30>)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이하생략)